

코로나19 관련 사증면제 정지 등 조치 알림

2020. 4. 9. 법무부

① 모든 외국인에 대한 기존 발급한 비자효력 잠정 정지

- (대상) 단기체류 비자에 한해 효력 정지
 - ▶ '20. 4. 5. 까지 발급된 모든 유효한 단수/복수 단기비자 해당
- (제외) 장기비자 및 단기취업(C-4)비자는 예외
- (조치) 항공사/선사는 현지 발권단계에서 차단

② 비자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

- (대상) 우리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국민
 - ▶ 비자면제협정 국가 중 56개국 및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중 34개국 (붙임)
 - ※ 정지대상 국가 국민은 항공기 환승을 제외한 모든 무사증입국 제한
- (제외) 외교관여권/관용여권 소지자, 입항 항공기(선박) 해당 승무원 (선원), ABTC(APEC 카드) 소지자는 예외
- (조치) 항공사/선사는 현지 발권단계에서 차단

③ 신규 비자발급 심사 강화

- (대상) 모든 공관에서 대한민국 비자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
- (조치) 진단서 및 격리동의서 제출 의무화 및 사증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 결정
 - ▶ 진단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만 인정, 격리동의서 양식은

별도 배포 예정

- ※ 진단서에는 발열, 기침, 오한, 두통, 호흡곤란, 근육통,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(신청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), 검사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

- ▶ 긴급 또는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판단하여 심사기간 단축(충분한 심사)에 한해 예외로 할 수 있음

- ※ 다만, 진단서 제출은 예외가 없으며, 격리동의서는 격리면제자에 한해 생략 가능

4 참고 사항

- (조치배경) 위의 조치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긴급한 결정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.
- (유의사항) 각 항공사/선사는 위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한 대상자가 탑승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바랍니다.

5 시행일자 : '20. 4. 13. 0시부터

- 현지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

<기준 : '20. 4. 8.>

사증면제협정 국가 56개

아·태(4)	△ 뉴질랜드 △ 말레이시아 △ 싱가포르 △ 태국
미주(18)	△ 바하마 △ 앤티가바부다 △ 아이티 △ 엘살바도르 △ 우루과이 △ 자메이카 △ 칠레 △ 코스타리카 △ 페루 △ 과테말라 △ 그레나다 △ 도미니카공화국 △ 브라질 △ 세인트루시아 △ 수리남 △ 콜롬비아 △ 트리니다드토바고 △ 파나마
유럽(29)	△ 불가리아 △ 이탈리아 △ 그리스 △ 네덜란드 △ 노르웨이 △ 덴마크 △ 독일 △ 라트비아 △ 러시아 △ 루마니아 △ 룩셈부르크 △ 리투아니아 △ 벨기에 △ 스웨덴 △ 스위스 △ 리히텐슈타인 △ 스페인 △ 슬로바키아 △ 아이슬란드 △ 에스토니아 △ 오스트리아 △ 체코 △ 카자흐스탄 △ 터키 △ 포르투갈 △ 폴란드 △ 프랑스 △ 핀란드 △ 헝가리
중동(4)	△ 모로코 △ 아랍에미리트 △ 이스라엘 △ 튀니지
아프리카(1)	△ 레소토

무사증입국 국가/지역 34개

아·태(14)	△ 나우루 △ 마셜제도 △ 마이크로네시아 △ 키리바시 △ 호주 △ 솔로몬제도 △ 투발루 △ 피지 △ 홍콩 △ 대만 △ 마카오 △ 브루나이 △ 사모아 △ 통가
미주(5)	△ 아르헨티나 △ 에콰도르 △ 온두라스 △ 캐나다 △ 파라과이
유럽(5)	△ 몬테네그로 △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△ 사이프러스 △ 세르비아 △ 크로아티아
중동(5)	△ 바레인 △ 오만 △ 사우디 △ 카타르 △ 쿠웨이트
아프리카(5)	△ 모리셔스 △ 남아프리카공화국 △ 보츠와나 △ 세이셸 △ 에스와티니